

2026학년도 경북보건대학교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재외국민 및 외국인(2호) ·
순수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6호) ·
결혼이주민(7호))



경북보건대학교
Gyeongbuk College of Health

01. 모집학과 및 전형별 모집인원

모 집 차 수	모 집 학 과	주/야	재외국민 및 외국인(2호)	북한이탈주민 및 순수외국인(6,7호)	계
수시1차	간호학과(4년제)(★)	주간	-	◆	◆
	보건복지과	주간	1	◆	1+◆
	뷰티디자인과(★)	주간	1	◆	1+◆
	스마트융합학부	주간	2	◆	2+◆
	K-드림학부	주간	-	◆	◆
수시2차	간호학과(4년제)(★)	주간	-	◆	◆
	보건복지과	주간	-	◆	◆
	뷰티디자인과(★)	주간	1	◆	1+◆
	스마트융합학부	주간	1	◆	1+◆
	K-드림학부	주간	-	◆	◆
정시모집	간호학과(4년제)(★)	주간	-	◆	◆
	보건복지과	주간	-	◆	◆
	뷰티디자인과(★)	주간	-	◆	◆
	스마트융합학부	주간	-	◆	◆
	K-드림학부	주간	-	◆	◆
합 계			6	◆	6+◆

※ 수시모집 종료 후 미충원 인원은 정시 모집에 이월하여 모집합니다.
※ '◆' 는 해당 전형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이며, 모집인원에 제한 없습니다. (단, 지원자격 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한국어능력 또는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우리 대학은 이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02.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내용	일시			비고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원서접수	2025.09.08.(월) ~ 09.30.(화)	2025.11.07.(금) ~ 11.21.(금)	2025.12.29.(월) ~ 2026.01.14.(수)	· 접수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168, 경북보건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지원센터 ※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불가
합격자 발표	2025.10.24.(금) 14:00	2025.12.05.(금) 14:00	2026.01.23.(금) 14:00	· 개별 안내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2025.12.15.(월) ~ 12.17.(수)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6.02.03.(월) ~ 2026.02.05.(수)			· 우리 대학 입시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2026.02.03.(월) ~ 2026.02.05.(수)			

03-1. 지원자격 (재외국민 및 외국인(2호) 전형)

전 형 명	모집단위	지 원 자 격								
재외국민 및 외국인(2호)	해당학과	가. 공통학력요건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자격구분별 자격 요건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인정 범위					
		해외근무자(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영주권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해외에서 재직(현지취업 및 자영업 포함)해야 함								
		· 해외 파견 재직자의 범위 : 해외파견 공무원, 해외근무상사직원 등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종 규정된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임직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 사무소)의 임직원,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등								
		· 현지 취업자의 범위 : 해외에서 직접 고용되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취업자, 외국에 소재한 국내기업이라도 현지에서 직접 채용된 경우								
		· 현지 자영업자의 범위 : 해외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다. 지원자 학력 요건								
		지원자격 구분			학력 요건					
		해외근무자(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외국 소재 학교 인정기준 : - “외국학교”라 함은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해당국의 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만 인정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불인정) - 외국 소재 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내에 소재한 학교만을 인정함 - 외국소재 학교의 형태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학교만을 인정하며, 그 외에 유아원·유치원·어학연수원 등의 교육기관 및 국내·외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불인정								
라. 최소 해외 [재학·근무·거주(영주)·체류] 기간 요건										
지원 자격 유형			학생			보호자		보호자의 배우자		
			재학	거주(영주)	체류	근무	거주(영주)	체류	거주(영주)	체류
해외근무자(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3년	3년	학생 재학 기간의 매년 기간 마다 3/4 이상	3년	3년	학생 재학 기간의 매년 기간 마다 2/3 이상	3년	학생 재학 기간의 매년 기간 마다 2/3 이상
· 외국 고등학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재학했을 경우 재학 기간으로 인정										
· 외국 고등학교 과정을 최소 1년 이상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 연속 3년 이상 재학했을 경우 재학 기간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 인정										
· 부모 및 지원자가 해당국가에서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수학기간에서 제외										
· 학기 중 출입국이 빈번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재학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지원자격 미달 처리										
· 해외파견 근무자 자녀의 경우 보호자의 근무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 기간만 인정										

03-2. 지원자격 (순수외국인·북한이탈주민(2호), 결혼이주민(7호) 전형)

전 형 명	모집단위	지 원 자 격	
순수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6호), 결혼이주민(7호)	해당학과	가. 공통지원자격요건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아래의 국적/학력 요건과 어학능력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나. 국적/학력 요건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인정 범위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외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국내 소재 학교에서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부모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에서 제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국내 또는 외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지원자가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지원자와 부모 모두 외국인(시민권 획득자 포함)이어야 하며, 이중국적자·무국적자는 지원 불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 또는 외국(북한 포함)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결혼이주민	·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외국 소재 학교 인정기준 : - “외국학교”라 함은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해당국의 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만 인정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불인정) - 외국소재 학교의 형태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학교만을 인정하며, 그 외에 유아원·유치원·어학연수원 등의 교육기관 및 국내·외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불인정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외국인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기타 학력 인정에 대한 판단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다. 어학능력 요건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인정 범위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입학 지원일 기준으로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자 (※ TOPIK 2급 소지자일 경우 졸업 전까지 TOPIK 3급 이상 취득해야만 졸업 가능)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04-1. 제출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2호) 전형)

제출대상 제출서류	해외 파견재직자	현지취업자	현지자영업자	비고
입학원서	○	○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출력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국내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초·중·고 전 과정 재학증명서 (재학기간 또는 재학학기가 명시)	○	○	○	
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 (재학기간 또는 재학학기가 명시)	○	○	○	
정규학교 인증서, 외국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혹은 해당국 영 사확인서	○	○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	○	○	
여권 사본(본인, 부·모)	○	○	○	
가족관계증명서	○	○	○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부·모)	○	○	○	출입국관리 사무소
해외 근무·경력기간이 명시된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	○	○	○	해당기관
해외지사 설치인증 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승인)서	○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또는 개인 소득세 납부 영수증			○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		
해외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1부		○	○	

- 주) 1.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발급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단,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30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 인정)
3.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로 되어있는 모든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지원자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5.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 후 2026년 2월 26일(목) 이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04-2. 제출서류 (순수외국인·북한이탈주민(6호), 결혼이주민(7호) 전형)

제출서류	제출대상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외국인	부모와 본인 모두 외국인	북한이탈 주민	결혼 이주민	비고
입학원서		○	○	○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출력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재학기간 또는 재학 학기가 명시)		○	○		○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초·중학교 성적증명서		○			○	
정규학교 인증서, 외국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혹은 해당국 영사확인서		○	○		○	대사관 또는 영사관
본인 및 부모의 외국국적증명서		○	○			여권 사본으로 대체 가능
지원자 및 부모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		○	○			해당국가
재정능력 입증서류 1,600만원 이상의 국내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단, 우리대학 한국어학당 출신 외국인 유학생은 800만원 이상)		○	○			잔고증명서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			해당시험 시행 기관 발행
지원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	국내거주 외국인에 한함
지원자 및 부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국내고교 및 검정고 시 합격자는 학교생 활기록부 및 검정고 시 합격증명서를 제 출
북한이탈주민 학력증명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주) 1.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발급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단, 은행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 인정)
3.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로 되어있는 모든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지원자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5.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 후 2026년 2월 26일(목) 이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05. 전형방법

모집시기	전형구분	학과	반영항목	비고
			반영비율(점수)	
수시 정시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2호)	보건복지과(주간) 뷰티디자인과 스마트융합학부	서류100% (800점)	
	순수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민 포함)(6,7호)	간호학과 보건복지과(주간) 뷰티디자인과 스마트융합학부 K-드림학부	서류100% (800점)	

- 주) 1. 지원자격 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한국어능력 또는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우리 대학은 한국어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자는 지원에 유의하여야 함
3. 수시모집 종료 후 최종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모집함

06.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배점
지원 동기의 우수성	200점
한국어 학습 방법의 적절성	200점
입학 후 학업 계획의 우수성	400점

07. 동점자 처리 기준

합격자 중 동점자는 아래의 「동점자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하되 최종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선발한다.

1순위	2순위
지원동기 점수가 우수한 자	이수학점이 높은 자

08. 합격자 사정 및 발표

가. 합격자 유의사항

- 입학이 허가된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한다.
- 우리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유학비자(D-2)가 발급되지 않으면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된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 학과별 각 모집시기의 미달인원은 다음 모집시기(수시(1차) → 수시(2차) → 정시모집 순서)의 동일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한다

나. 합격자 발표

-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 ipsi.gch.ac.kr
- 지원자는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반드시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09. 합격자 등록 및 등록포기

가. 합격자 등록

-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된다.

나.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 본 대학 등록자가 입학을 포기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포기각서[별지 서식]를 제출한 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 우리대학 내 동일한 접수기간에 이중지원은 할 수 없으며, 개인별 입학고사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입학원서 접수 후 지원자격 미달로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우리대학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 없이 공정한 선발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추가합격자 통보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하며, 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당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원합격 후 미등록]으로 간주하며, 차순위로 충원한다.
-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소 및 전화번호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 책임이므로 모든 지원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이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리대학 입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 054-420-9251~9252)
- 우리대학은 재학생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1. 등록금

학 과	입 학 금	수 업 료	계
간호학과(4년제)	없음	₩2,926,000	₩2,926,000
뷰티디자인과		₩2,584,000	₩2,584,000
스마트물류계열		₩2,573,000	₩2,573,000
보건복지과(주간)		₩1,759,000	₩1,759,000

주) 2025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대학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기숙사

구 분	동수	생활형태	총 생활인원	비 고
한빛학사(여)	3개동	침대형	450	각 방별 : 옷장, 책상, 의자, 전용선(LAN), 신발장 냉난방 시설 완비
한빛학사(남)	3개동		151	
한빛학사(대구)	1개동		134	
계	7개동		735	
복지 시설	식 당	1개동	좌석수 310여석	
	기타	기숙사 사용료 : 723,000원(15주 기준) [식비 미포함] 2025학년도 기준 식비(1식) : 4,800원 (식권 대량 구매 시 1식 4,300원에 구매 가능)		

- 주) 1. 2025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대학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이버기숙사 운영, 각 방별 전용선(LAN) 설치, 원거리 거주 학생 우선 선발

13. 장학금

구 분	장 학 명	장 학 생 선 발 기 준	장 학 혜 택
특 별 장학금	요양보호유학생장학금	본 대학 보건복지과 정규학위과정에 입학하여 본 대학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자격과정 취득 후 경북지역 요양보호기관에 취업한 외국인	입학시 입학금 전액 지급 및 수업료 30% 지급 2학년(2개 학기) 수업료 면제 본 대학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료 50% 감면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 ·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입학한 외국인	입학시 입학금 전액 지급 및 수업료의 30% 지급, 재학기간동안 수업료의 30% 지급
	결혼이민여성장학금	결혼 후 2년 이상 국내 거주자	재학기간동안 수업료의 50% 장학금으로 지급
	탈북가족사랑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일정금액 지급
	학업장려장학금		입학 학기 출석률 100% 달성 시 50만원 지급
	어학성적우수장학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 ·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입학한 외국인	입학시 TOPIK 급수에 따라 지급 TOPIK 3급(30만원), TOPIK 4급(40만원), TOPIK 5급(50만원), TOPIK 6급 : 수업료 전액
	외국인 근로장학금		행정부서 유학생 근로 학생(월 장학금 50만원 이내)

주) 대학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